

# 호반써밋 풍무Ⅲ 입주자 모집공고



-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70-783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09.(목)	2026.07.20.(월)	2026.07.21.(화)	2026.07.22.(수)	2026.07.28.(화)	2026.07.30.(목) ~2026.08.07.(금)	2026.08.10.(월) ~2026.08.12.(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을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obansummit-pungmu3.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 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단, APT 철거주택 소유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0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20.(월)	2026.07.21.(화)	2026.07.22.(수)	2026.07.28.(화)	2026.07.30.(목) ~2026.08.07.(금)	2026.08.10.(월) ~2026.08.12.(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li> <li>☎ 1670-7830</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7.28.)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청 주택과 - 26406호(2026.07.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660세대  
 [특별공급 448세대(기관추천 70세대, 철거주택 소유자 1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103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115세대, 신생아 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철거 주택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329	01	059.9848A	59A	59.9848	22.1506	82.1354	51.2474	133.3828	39.1344	130	14	1	14	20	4	23	14	90	40	8
	02	059.9813B	59B	59.9813	21.3909	81.3722	51.2443	132.6165	39.1321	108	11	-	11	17	3	19	11	72	36	7
	03	084.9897A	84A	84.9897	29.1140	114.1037	72.6100	186.7137	55.4478	178	19	-	19	28	5	31	19	121	57	8
	04	084.9810B	84B	84.9810	29.2410	114.2220	72.6026	186.8246	55.4421	103	11	-	11	16	3	18	11	70	33	4
	05	084.9874C	84C	84.9874	29.4831	114.4705	72.6080	187.0785	55.4463	65	7	-	7	10	2	11	7	44	21	4
	06	084.9795D	84D	84.9795	29.4231	114.4026	72.6013	187.0039	55.4411	76	8	-	8	12	2	13	8	51	25	3
합 계										660	70	1	70	103	19	115	70	448	212	34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D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3	2	1	1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4	1	1	1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4	3	2	2	16

	중소기업 근로자		3	2	4	3	2	2	16
	장애인	경기도	2	1	2	1	1	1	8
		서울특별시	1	1	1	1	-	1	5
		인천광역시	1	1	1	-	-	-	3
	철거주택 소유자(제44조)		1	-	-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7	6	10	6	4	4	37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5	9	5	3	4	33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17	28	16	10	12	10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3	5	3	2	2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23	19	31	18	11	13	115
	신생아 특별공급		14	11	19	11	7	8	70
	<b>합 계</b>		<b>90</b>	<b>72</b>	<b>121</b>	<b>70</b>	<b>44</b>	<b>51</b>	<b>448</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 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체결시	계약 30일 내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시	2026-09-14	2027-01-22	2027-05-24	2027-09-22	2028-02-22	2028-07-24	2028-12-22		입주지정일
59A	130	405동 3호,5호 406,407,408동 2,4호	1	6	203,197,000	352,303,000	555,500,000	10,000,000	4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166,650,000
			2	6	203,197,000	361,303,000	564,500,000	10,000,000	4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169,350,000
			3	8	203,197,000	370,303,000	573,500,000	10,000,000	4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172,050,000
			4	8	203,197,000	379,203,000	582,400,000	10,000,000	4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174,720,000
			5~9	36	203,197,000	388,203,000	591,400,000	10,000,000	49,140,000	59,140,000	59,140,000	59,140,000	59,140,000	59,140,000	59,140,000	59,140,000	177,420,000
			10층이상	66	203,197,000	394,203,000	597,400,000	10,000,000	4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179,220,000
59B	108	405동 4호 406,407,408동 1,3호	1	2	203,185,000	341,915,000	545,100,000	10,000,000	4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163,530,000
			2	2	203,185,000	350,615,000	553,800,000	10,000,000	4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166,140,000
			3	7	203,185,000	359,415,000	562,600,000	10,000,000	4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56,260,000	168,780,000
			4	7	203,185,000	368,215,000	571,400,000	10,000,000	4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171,420,000
			5~9	31	203,185,000	377,015,000	580,200,000	10,000,000	48,020,000	58,020,000	58,020,000	58,020,000	58,020,000	58,020,000	58,020,000	58,020,000	174,060,000
			10층이상	59	203,185,000	382,915,000	586,100,000	10,000,000	4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175,830,000
84A	178	401,405동 2호 402동 1호 403동 2,3,5호 404동 2,3호	1	5	287,901,000	421,199,000	709,100,000	10,000,000	60,910,000	70,910,000	70,910,000	70,910,000	70,910,000	70,910,000	70,910,000	70,910,000	212,730,000
			2	8	287,901,000	432,599,000	720,500,000	10,000,000	6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216,150,000
			3	8	287,901,000	444,099,000	732,000,000	10,000,000	6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19,600,000
			4	8	287,901,000	455,499,000	743,400,000	10,000,000	64,340,000	74,340,000	74,340,000	74,340,000	74,340,000	74,340,000	74,340,000	74,340,000	223,020,000
			5~9	40	287,901,000	466,899,000	754,800,000	10,000,000	65,480,000	75,480,000	75,480,000	75,480,000	75,480,000	75,480,000	75,480,000	75,480,000	226,440,000
			10층이상	109	287,901,000	474,599,000	762,500,000	10,000,000	6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228,750,000
84B	103	401동 3호	1	1	287,871,000	411,629,000	699,500,000	10,000,000	59,950,000	69,950,000	69,950,000	69,950,000	69,950,000	69,950,000	69,950,000	209,850,000	

		402동 2호 403,404동 4호	2	2	287,871,000	422,929,000	710,800,000	10,000,000	6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213,240,000	
			3	4	287,871,000	434,229,000	722,100,000	10,000,000	6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216,630,000
			4	4	287,871,000	445,429,000	733,300,000	10,000,000	6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219,990,000
			5~9	20	287,871,000	456,729,000	744,600,000	10,000,000	6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223,380,000
			10층이상	72	287,871,000	464,329,000	752,200,000	10,000,000	65,220,000	75,220,000	75,220,000	75,220,000	75,220,000	75,220,000	75,220,000	75,220,000	225,660,000
84C	65	401,403,404 405동 1호	2	1	287,893,000	414,707,000	702,600,000	10,000,000	6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210,780,000	
			3	4	287,893,000	425,807,000	713,700,000	10,000,000	6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214,110,000	
			4	4	287,893,000	437,007,000	724,900,000	10,000,000	62,490,000	72,490,000	72,490,000	72,490,000	72,490,000	72,490,000	72,490,000	217,470,000	
			5~9	20	287,893,000	448,107,000	736,000,000	10,000,000	6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220,800,000
			10층이상	36	287,893,000	455,607,000	743,500,000	10,000,000	6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223,050,000
84D	76	401동 4호 402동 3호 404동 5호	1	2	287,866,000	396,534,000	684,400,000	10,000,000	5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205,320,000	
			2	2	287,866,000	407,534,000	695,400,000	10,000,000	5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208,620,000	
			3	3	287,866,000	418,634,000	706,500,000	10,000,000	60,650,000	70,650,000	70,650,000	70,650,000	70,650,000	70,650,000	70,650,000	211,950,000	
			4	3	287,866,000	429,634,000	717,500,000	10,000,000	61,750,000	71,750,000	71,750,000	71,750,000	71,750,000	71,750,000	71,750,000	215,250,000	
			5~9	15	287,866,000	440,734,000	728,600,000	10,000,000	62,860,000	72,860,000	72,860,000	72,860,000	72,860,000	72,860,000	72,860,000	72,860,000	218,580,000
			10층이상	51	287,866,000	448,034,000	735,900,000	10,000,000	6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220,770,000

#### ■ 공통 유의 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이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내 사업주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 비용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지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중도금을 조달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사본 불가)하여야 하며, 또한 제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이중 당첨 등 부적격자로 판명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본 아파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 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호수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급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4 특별공급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b>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b>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 시</b>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은 배제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b>외의 세대원이</b>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b>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b></p>			
무주택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주택 소유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315 547 2107 743">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li> </ul>

	<p>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

**4-2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전용면적 85㎡ 이하 : 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당해 사업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받은 자는 제외)</li> <li>■ 시행위탁사로부터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조성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불필요)</li> <li>■ 시행위탁사가 선정하여 통보한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ul> <p>※ 청약신청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p> <p>- 경로 : 청약홈 &gt; 청약신청 &gt; APT 특별공급 &gt; 주택명 선택 &gt;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p>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김포시) 거주자 우선 선정함]</li> </ul>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b>2명</b>	<b>25</b>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순위</li> </ul>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기준</li>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09.(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b>■ 자산기준</b>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b>■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
당첨자 선정방법	<b>■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 <b>■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b> <b>■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b>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970 2134 133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colspan="2" style="width: 6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우선공급 (50%)</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일반공급 (20%)</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3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기준</li>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li> </ul>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09.(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p>■ 자산기준</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p> <p>- 자산보유기준</p>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p>건축물</p>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7**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p> <p>■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당첨자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선정방법	<b>■ ①소득구분</b>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b>■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b>							
비고	<b>■ 자녀기준</b>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b>■ 소득기준</b>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09.(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인(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59A, 59B)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84C, 84D)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b>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b>②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p><b>단계</b></p> <p>1단계</p>	<p><b>비율</b></p> <p>추첨제 물량의 75%</p>	<p><b>내용</b></p> <p>무주택세대구성원</p>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b>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b></p> <p>-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b>추첨제로 청약 가능합니다.</b></p>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
특별 공급	기관추천, 철거주택 소유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b>2026.07.20.(월)</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li> <li>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 1670-78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b>2026.07.28.(화)</b></li> <li>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일반 공급	1순위	<b>2026.07.21.(화)</b>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b>2026.07.22.(수)</b> 09:00~17:30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b>공고단지 청약연습</b></p>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b>당첨자발표 서비스</b></p>	<p><b>청약홈</b></p>	<p>-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b>조회기간</b> : 2026.07.28.(화) ~ 2026.08.0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b>문자</b></p>	<p>- <b>제공일시</b> : 2026.07.2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 기간	신청장소
<p>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p>	<p>2026.07.30.(목) ~ 2026.08.07.(금) (9일간, 10:00~16:00)</p>	<p>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p>

-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해외 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또는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또는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li> <li>※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li> <li>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li> <li>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ul>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가점제 청약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공급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존속 및 만 30세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 신청자가 단신 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 자격 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당첨 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 소통방 &gt; APT 당첨 사실 조회</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인터넷발급 불가)</li> <li>-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li>※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국가유공자는 보훈관리명단으로 접수함.</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가족부의 「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동일 등분상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ul>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li> </ul>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li> </ul>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ul>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li> <li>※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청약자와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li> </ul>
생애최초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lt;표&gt;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ul>

특별공급		(아래<표>참고)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li>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li> <li>(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li> </ul>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li> </ul>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ul>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청약자(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분), 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접수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	위임장	청약자(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li> </ul>
	○	신분증	청약자(본인)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에 필요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증 서류</li> </ul>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빈칸으로 발급함으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li>※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li> <li>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li>※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li> <li>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li> <li>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li> <li>※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li> </ul>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li> <li>※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li> </ul>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li> <li>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ul>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li> <li>[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li> <li>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ul>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li> <li>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li> <li>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li> <li>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li> <li>③ 위촉·해촉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li> </ul>	① 해당직장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li> </ul>	① 건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등기소

있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단위, 주택 및 건물, 토지 대상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정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8.10.(월) ~ 2026.08.12.(수) (3일간, 10:00~16:00)	호반써밋 품무Ⅲ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 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만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분양 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분양 대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393301-04-1215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4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4010101홍길동" 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계약금은 견본주택에서 현금이나 수표 수납 불가함으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요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li> <li>•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li> </ul>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li> </ul>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li> </ul>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소명자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li> </ul>
	○		전자 정부수입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li> <li>※ 취급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에서 구매 및 출력</li> <li>• 수입인지 구매금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의 절반</li> <li>※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75,000원</li> <li>※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0억원 초과 : 3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175,000원</li> <li>※ 사업주체 부담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별도로 발행하여 계약서에 첨부 예정</li> </ul>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li> <li>※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li> </ul>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li> <li>※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li> </ul>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li> <li>※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ul>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li> <li>•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li> <li>•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li> </ul>
			위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건축물은 (주)호반산업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분양수입금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서 관리합니다.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주)호반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포함)만 제한적으로 수행합니다.
- 분양계약과 관련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주)호반산업에게 있습니다.
- (주)호반산업이 부도, 금융거래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주)호반산업이 보유한 본 사업 시행자 및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양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매매)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법적 책임은 (주)호반산업에게 있습니다.
- 본 건축물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은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을 환불받을 수분양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에서 수분양자가 실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액을 결정하기로 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청약 접수 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하면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비규제지역(김포시)인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균등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될 때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 계약자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 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알선한 금융기관이 2곳 이상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 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리 등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및 내부 여신정책, 사업장별 사업조건, 대출 규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 대출 실행 시기, 대출 취급 구조 및 계약자별 신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인근 사업장과 대출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안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리 차이, 대출조건 차이 또는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 1회부터 중도금 6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고려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 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일 : 2029년 5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 예정 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지면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 암반 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카페, 키즈스테이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라운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방재실, 경비실,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근로자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 ■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청약 또는 계약에 관한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 사항

##### ▣ 초등학교

1. 풍무역세권 B4블록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생은 신설 예정인 (가칭)풍무역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 중학교

1. 중학교 신입생(입학 예정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에 따라 김포중학군[감정중, 금파중, 김포중, 김포여중, 양도중, 풍무중, (가칭)풍무역 중]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중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해당 중학군 내 결원이 있는 중학교에만 전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현행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김포중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한 경우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풍무역중으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칭)풍무역중은 김포중학군 내 기존 학교인 김포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및 학교명 변경(2027학년도 예정) 후 신설대체이전(학교명, 학교 역사 등 보존)을 통해 개교 추진 예정입니다.

##### ▣ 고등학교

1. 김포시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방법은 향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1. 신설 예정교의 개교 여부 및 개교 시기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승인 여부 및 기타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배정 방법 등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 시	2028-03-22	입주지정일
59A	5,970,000	597,000	3,582,000	1,791,000
59B	4,460,000	446,000	2,676,000	1,338,000
84A	5,860,000	586,000	3,516,000	1,758,000
84B	7,130,000	713,000	4,278,000	2,139,000
84C	7,100,000	710,000	4,260,000	2,130,000
84D	5,500,000	550,000	3,300,000	1,650,000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국민은행	393301-04-121657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최초 발코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4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4010101홍길동" 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반영해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하단 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 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품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사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한 감리감독에 따라 시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의 종류: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안내(발코니 비확장 시, 일부 품목 선택 불가)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 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 고
				일반형	고급형	
59A	1안	2	거실+침실1	4,100,000	4,700,000	-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5,000,000	5,800,000	-
	2-2안	2	(거실+침실2)+침실1	4,300,000	4,900,000	*거실 확장형 : 선택 가능 *각실 사용형 : 선택 불가
	3안	3	거실+침실1+침실3	5,200,000	6,000,000	-
	4-1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7,100,000	-
	4-2안	3	(거실+침실2)+침실1+침실3	5,300,000	6,100,000	*거실 확장형 : 선택 가능 *각실 사용형 : 선택 불가
59B	1안	2	거실+침실1	3,800,000	4,400,000	-
	2안	3	거실+침실1+침실2	5,300,000	6,100,000	-
	3안	3	거실+침실1+침실3	5,500,000	6,300,000	-
	4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00,000	7,400,000	-
84A	1안	3	거실+주방+침실1	5,000,000	5,800,000	-
	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100,000	7,100,000	-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300,000	7,300,000	-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400,000	8,700,000	-
	5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8,700,000	10,200,000	-
84B	1안	3	거실+주방+침실1	5,700,000	6,500,000	-
	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00,000	7,600,000	-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00,000	7,600,000	-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9,000,000	-
84C	1안	3	거실+주방+침실1	5,200,000	6,100,000	-
	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600,000	7,600,000	-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700,000	7,700,000	-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9,200,000	-

	5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200,000	10,700,000	-
84D	1안	3	거실+주방+침실1	5,300,000	6,100,000	-
	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300,000	7,300,000	-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00,000	7,500,000	-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9,000,000	-

- 본 단지의 시스템에어컨은 옵션당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및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통합)은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선택 시 2-2안, 4-2안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2) 천장형 공기 청정기 (시스클라인)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 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 고
59A	1안	2	거실+침실1	2,200,000	-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3,250,000	-
	2-2안	2	(거실+침실2)+침실1	2,200,000	*거실 확장형 : 선택 가능 *각실 사용형 : 선택 불가
	3안	3	거실+침실1+침실3	3,250,000	-
	4-1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300,000	-
	4-2안	3	(거실+침실2)+침실1+침실3	3,250,000	*거실 확장형 : 선택 가능 *각실 사용형 : 선택 불가
59B 84B,84D	1안	2	거실+침실1	2,200,000	-
	2안	3	거실+침실1+침실2	3,250,000	-
	3안	3	거실+침실1+침실3	3,250,000	-
	4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300,000	-
84A,84C	1안	2	거실+침실1	2,200,000	-
	2안	3	거실+침실1+침실2	3,250,000	-
	3안	3	거실+침실1+침실3	3,250,000	-
	4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300,000	-
	5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5,350,000	*84A : 침실4 / *84C : 알파룸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능력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기준에 부합된 제품이나, 동작에 따른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제품은 천장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제품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디퓨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위치 및 설치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디퓨저 등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및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통합)은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선택 시 2-2안, 4-2안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3) 추가 선택품목 - 마감재 및 가구

□ 현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현관 특화	- 중문 미설치 - 신발장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신발장(하부 조명)	59A	1,600,000	-
			59B	1,600,000	-
	- 중문 미설치 - 신발장 - 현관창고 가구도어(여닫이형)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신발장(하부 조명) - 현관창고 폴딩도어	84A	1,800,000	-
			84B	1,800,000	-
			84C	1,800,000	-
			84D	1,800,000	-

- 현관 특화 옵션 선택시, 신발장 하부에 조명이 설치됩니다.
- 현관 특화 옵션 선택시, 현관창고 기본 여닫이형 가구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4A,B,C,D 해당)
-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은 본공사 시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벽/바닥 마감재 특화	- 일반 강마루 - 벽지	- 광폭 강마루 - 소파 뒷벽 및 복도 시트 패널	59A	3,000,000	*거실 확장형 선택 시 (기둥면 시트패널 포함) *현관 벽면 포함
				2,760,000	*각실 사용형 선택 시 *현관 벽면 포함
			59B	2,840,000	*현관 벽면 포함
			84A	2,550,000	-
			84B	1,590,000	*주방 마감 특화 선택 시 *복도 벽면 제외
				1,950,000	*주방 마감 특화 미 선택 시 *복도 벽면 제외
			84C	3,140,000	-
			84D	2,940,000	-
거실 아트월 마감재 특화	- 타일 (600 X 1,200)	- 세라믹 타일	59A	2,780,000	-
			59B	2,760,000	-
			84A	3,240,000	-
			84B	2,900,000	-
			84C	2,960,000	-

			84D	4,360,000	-
복도 아트월 마감재 특화	- 벽지	- 세라믹 타일	84B	2,320,000	*침실 2,3 평면특화 미선택시
				2,630,000	*침실 2,3 평면특화 선택시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시트 패널의 범위는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및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통합)은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 주방 특화 (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액	비고
주방 수납 특화	- 기본형 아일랜드 - 팬트리 (가구도어+포스트형 선반) - 팬트리 기본 조명	- 아일랜드 연장형 장식장 (조명형 선반+유리 장식장) - 장식장 벽 (3면) : 세라믹 타일 - 원형 다운라이트	59A	2,700,000	-
			84B	1,890,000	-
	- 기본형 아일랜드 (측면 PET 마감) - 상부장 : PET 도어	- 바탑형 아일랜드 (측면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 상부장 : 유리 플랩장	84C	1,770,000	*유리 플랩장 : 상부장 1면 적용 (주방창면)
			84D	1,570,000	
팬트리 특화	- 가구도어(여닫이형)+포스트형 선반 - 기본 조명	- 폴딩도어+벽찬넬형 선반+하부장 - 원형 다운라이트	84B	970,000	-
냉장고장	- 일반형 냉장고장 (상부 수납장+키큰장(선반형, PET도어))	- 옵션형 냉장고장 (상부 수납장+키큰장(서랍형, PET도어))	59A	530,000	-
			59B	530,000	-
			84A	530,000	-
			84C	530,000	-
			84D	530,000	-
	- 일반형 냉장고장 (상부 수납장+키큰장(선반형, PET도어))	- 옵션형 냉장고장 (상부 수납장+유리 장식장)	84B	1,930,000	*유리 장식장 내부 세라믹타일 상판 포함

- 59A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아일랜드 연장형 장식장의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상판 마감 동일)이 적용됩니다.
- 59A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주방 마감 특화' 옵션 미선택 시에도 장식장 벽 3면은 타일(300X600)이 아닌 세라믹타일이 설치됩니다.
- 84B,C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아일랜드 사이즈(가로x세로)가 변경됩니다. (\*기본형 아일랜드(W1,800 x D700), 바탑형 아일랜드(W2,000 x D900))
- 84D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아일랜드 사이즈(세로)가 변경됩니다. (\*기본형 아일랜드(D700), 바탑형 아일랜드(D900))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 구성 및 형태,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마감)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액	비고
주방 마감 특화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 벽 : 타일(300 X 600)	- 상판 : 세라믹 타일 - 벽 : 세라믹 타일	59A	3,97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PET)
			59B	3,11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PET)
			84A	4,600,000	*ㄷ자 주방 측면 마감(PET)
			84B	6,88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PET)
			84C	5,59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PET)
			84D	5,24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PET)
주방 마감 특화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 벽 : 타일(300 X 600)	- 상판, 아일랜드 연장면 : 세라믹 타일 - 벽 : 세라믹 타일	59A	4,76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PET)
			84B	8,300,000	-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 바탐형 아일랜드 측면 : 엔지니어드 스톤 - 벽 : 타일(300X600)	- 상판 : 세라믹 타일 - 바탐형 아일랜드 측면 : 세라믹 타일 - 벽 : 세라믹 타일	84C	6,610,000	-
			84D	6,090,000	-

- 59A 타입의 장식장 벽 (3면) 세라믹 타일은 '주방 수납 특화' 옵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주방 마감 특화' 적용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4B 타입의 바탐형 아일랜드 및 측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은 '주방 수납 특화' 옵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주방 마감 특화'를 동시 선택할 경우 아일랜드 측면이 세라믹타일 마감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 84B 타입 '주방 마감 특화' 선택 시 벽 세라믹타일 범위가 연장되오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수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액	비고
드레스룸 특화	- 가구도어 + 포스트형 선반 - 파우더장(뒷 벽 LPM 마감) - 기본 조명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선반 - 파우더장(뒷 벽 세라믹타일 마감) +불박이장(유리도어+PET도어) - 제습기+특화 조명	59A	5,240,000	*옵션 선택 시 파우더 깊이 변경 (기본 400mm → 옵션 600mm)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통합형 벽판넬형 선반 - 제습기+특화 조명	84A	3,330,000	-
			84C	2,270,000	-
		- 원슬라이딩 도어+시트패널	84B	3,750,000	-

		- 통합형 벽판넬형 선반 - 제습기+특화 조명	84D	3,950,000	-	
침실2,3 평면 특화	- 침실2 여닫이형 목도어+벽체 - 기본 조명 - 불박이장 미제공	- 침실2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침실2 원형 다운라이트	- [선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84B	3,170,000	*옵션 선택 시 침실2 내경 축소 (W2,700 → W2,400) *옵션 선택 시 침실3 내경 증가 (W3,000 → W3,300) *불박이장 침실3 설치 *M/H 설치안 : 데스크형 불박이장
			- [선택2] 침실3 대형 불박이장		2,770,000	
침실 수납 특화	- 미제공	- 불박이장 (측면 은경)		59A	1,160,000	*W1,500, 침실3 설치
					1,400,000	*W2,000, 침실3 설치 *거실 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59B	1,160,000	*W1,500, 침실3 설치
				84A	1,160,000	*W1,500, 침실3 설치
				84B	1,160,000	*W1,500, 침실2 설치 *침실2.3 평면 특화 선택시, 선택불가
				84C	1,320,000	*W1,700, 침실3 설치
		- 침실2,3 팬트리 (가구도어 + 포스트형 선반)	84D	1,870,000	*침실2,3 2개소 설치	

-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및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통합)은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 59A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통합) 선택 시 침실3의 내경은 증가됩니다. (W2,700 → W3,200)
- 84B 침실2,3 평면 특화 옵션과 침실 수납 특화 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조명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거실+침실1	[거실] - 우물천장+기본 조명 - 커튼박스 조명 미적용 - 실링팬 미적용 [침실1] - 기본 조명	[거실] - 우물천장 4면 리니어조명 (직부등 디밍 시스템+간접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실링팬 [침실1] - 원형 다운라이트	59A	3,200,000	*거실 확장형 선택 시 (우물천장 크기 변경 포함)
				2,460,000	*각실 사용형 선택 시
			84A	3,020,000	-
			84B	3,260,000	*옵션 선택 시 거실 커튼박스 전면/측면(2면) 간접등 적용
거실+주방+침실1	[거실+주방] - 우물천장+기본 조명 - 커튼박스 조명 미적용 - 실링팬 미적용 [침실1] - 기본 조명	[거실+주방] - 우물천장 2면 리니어조명 (직부등 디밍 시스템+간접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실링팬 [침실1] - 원형 다운라이트	59B	2,420,000	-
				2,790,000	-
			84C	2,790,000	-
			84D	2,680,000	-

식탁 펜던트등	- 기본 직부등(4000K)	- 식탁 펜던트등(3000K)	59A,B	340,000	-
			84A,B,C,D	640,000	-
스위치 특화	- 기본 생활 정보기 - 기본 네트워크 스위치	- 고급형 생활 정보기 - 홈 AI 스위치	59A	480,000	-
			59B	480,000	-
			84A	540,000	-
			84B	480,000	-
			84C	540,000	-
			84D	480,000	-

- 조명 특화 미선택 시 기본 조명의 색온도는 4000K(주백색) 입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간접등(리니어 간접등 및 커튼박스 간접등)의 색온도는 3000K(전구색)으로 적용됩니다.
- 식탁 펜던트등 선택 시 펜던트의 색온도는 3000K(전구색)으로 적용됩니다.
- 59A 각실 사용형(거실, 침실2 개별 사용) 및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통합)은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 59A, 84A 주방 우물 천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욕실1 (공용욕실)	벽: 국산타일(300X600) 바닥: 국산타일(300X300) 수전류: 국산 기본 (크롬색상) 금구류: 국산 기본 (크롬색상)	벽: 유럽산타일 (600X600) 바닥: 유럽산타일 (300X300) 수전류: 국산 고급형 (유색) 금구류: 국산 기본 (유색)	59A, 59B	2,540,000	-
	벽: 국산타일(300X600) 바닥: 국산타일(300X300) 수전류: 국산 기본 (크롬색상) 금구류: 국산 기본 (크롬색상)	벽: 유럽산타일 (600X1,200) 바닥: 유럽산타일 (300X300) 수전류: 국산 고급형 (유색) 금구류: 국산 기본 (유색)	84A,84B 84C,84D	2,940,000	
욕실2 (부부욕실)	벽: 국산타일(300X600) 바닥: 국산타일(300X300) 상부장: 기본 여닫이장 수전류: 국산 기본(크롬색상) 금구류: 국산 기본(크롬색상) 샤워부스: 크롬색상	벽: 유럽산타일 (600X1,200) 바닥: 유럽산타일 (300X300) 상부장: 기본 여닫이장+간접등 수전류: 국산 고급형 (유색) 금구류: 국산 기본 (유색) 샤워부스: 유색	59A, 59CB	3,170,000	-
	벽: 국산타일(300X600) 바닥: 국산타일(300X300) 상부장: 기본 여닫이장 수전류: 국산 기본(크롬색상) 금구류: 국산 기본(크롬색상) 샤워부스: 크롬색상	벽: 유럽산타일 (600X1,200) 바닥: 중국산타일 (300X300) 상부장: 기본 여닫이장+간접등 수전류: 국산 고급형 (유색) 금구류: 국산 기본 (유색) 샤워부스: 유색	84A,84B 84C,84D	2,640,000	
욕실 1,2	기본 환풍기	복합 환풍기 (LG / M-X0120BASR)	전타입	990,000	*1개소 선택 기준 금액

	투피스형 양변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410,000	*1개소 선택 기준 금액
--	----------	-----------	-----	---------	---------------

- 공용욕실, 부부욕실 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코너선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용욕실, 부부욕실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 환풍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용욕실,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옵션 선택 시 투피스형 양변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전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본형	선택형(유상)	해당 타입	금 액	비 고
전기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인덕션 (LG / BEI3ASB4BIE)	전타입	1,150,000	블랙
		3구 인덕션 (삼성 / CC80H63URHS)		1,150,000	화이트
전기 오븐	기본 수납장	고급형 (LG / MZ941CLCAT)	전타입	810,000	-
		고급형 (삼성 / NQ50T8539BK)		810,000	
식기세척기	기본 수납장	가구패널형 (LG / DIE5PT)	전타입	1,100,000	주방가구 마감, 열풍건조 X
		가구패널형 (LG / DIE6PT)		1,380,000	주방가구 마감, 열풍건조 O

- 전기쿡탑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형 3구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 모델 번호는 제조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선택품목 납부 일정(금액) 및 납부 계좌

■ 납부 일정(금액)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028-04-24	입주지정일
추가 선택품목 일정별 납부 금액	10%	20%	70%

※ 최초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납부 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국민은행	393301-04-121657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공사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

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4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4010101홍길동" 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납부 기일 및 납부 금액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철근콘크리트 공사 착수 시점 등)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 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당 실내기/실외기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매립 냉매배관은 전실(59A타입 - 거실(스탠드), 침실1(벽걸이), 침실2(벽걸이), 침실3(벽걸이) / 59B타입 - 거실(스탠드), 침실1(벽걸이), 침실2(벽걸이), 침실3(벽걸이) / 84A타입 - 거실(스탠드), 침실1(벽걸이), 침실2(벽걸이), 침실3(벽걸이), 침실4(벽걸이) / 84B타입 - 거실(스탠드), 침실1(벽걸이), 침실2(벽걸이), 침실3(벽걸이) / 84C타입 - 거실(스탠드), 침실1(벽걸이), 침실2(벽걸이), 침실3(벽걸이) / 84D타입 - 거실(스탠드, 침실1(벽걸이), 침실2(벽걸이), 침실3(벽걸이)) 에 설치·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해당 실의 매립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매립 냉매배관의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냉매배관 등 기본 설치품목을 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되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주택형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서 난방 기능은 없으며, 가동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부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 세대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천장 부분에 시공되는 단열재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는 멀티형(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지만,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 연결하여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누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된 실외기 외에,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과도한 전기로,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누전 또는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외기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쿱탑"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 배관(노즐)은 제거되지 않으며, 배관 말단 부위는 캡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스쿱탑 설치 및 가스배관 연결은 입주자 공사분임.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 선택품목(안전 방법 방충망 등) 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

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각 실 바닥 <타일,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 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욕실 바닥	거실 바닥 미장 마감 각 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다목적실)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벽, 천장재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 알파룸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타일> : 주방 벽, 욕실 벽, 인테리어 마감 일체 <기타> : 몰딩, 우물천장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욕실 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장재, 젤다이,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 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약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약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 벽마감,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주방 자동식 소화기, 가스쿡탑, 렌지후드, 콘센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 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현관창고, 파우더장, 드레스룸 가구도어 및 포스트형 시스템선반, 다용도실 시스템선반	해당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 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실외기실 출입 창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D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9,757,000	29,779,000	38,265,000	38,504,000	38,630,000	38,332,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 관련 법령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층수가 4층 이하일 경우 외부 석재 마감으로 인해 발코니 창호 개구부까지 외부 석재가 시공되오니 추후 외부 창호 설치시 석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단지역건 및 유의 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li> <li>•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36개월간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자재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li> <li>•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자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시 본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함.</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b>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개발계획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b></li> <li>•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예정임.</li> <li>•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는 401동, 403동, 404동, 408동 옥상층에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같은 동 옥상층 및 지하층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li> </ul>
개발계획 및 단지 외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완충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li> <li>• 본 단지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와 인접한 지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li> <li>•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b>본 단지는 인접한 상업용지(38층) 및 공동주택용지(29층), 학교(초/중학교 등) 등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빛공해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b></li> <li>• 도로, 하수, 가스, 공원, 학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단지 동측 및 북측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또한 추후 시공 시 계획고 등이 변경 되어 단지내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이 추가 및 변경설치 될 수 있음.</li> <li>• 단지 주변 도로 및 기반시설의 레벨 및 계획고는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부 계획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취·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기반시설의 미완료로 인한 당 사업지의 정식 사용승인이 아닌 동별 준공, 또는 임시사용 등이 불가피할 경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 및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 할 수 없음.</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li> <li>•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육/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경관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 레벨 등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li> <li>•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 해당부지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단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주변 인접대지(연결/완충녹지, 교육시설, 주거시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 공동주택, 초등학교, 보행자도로, 어린이공원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교통체증, 소음발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남측 : 주상복합 C5블럭 (38층 이하), 동측 : 보행자 전용도로(폭 10M), 공동주택 B5블럭 (30층 이하), 서측 : 공동주택 B3블럭 (30층 이하), 북측 : 보행자 전용도로 (폭 6.3M), 초/중학교 (5층이하)</li> <li>- 단지 주변 도로, 서측 대로변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주변 도로 서측 : 폭 30m, 남측 : 폭 24m, 북측 : 폭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li> <li>•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함.</li> <li>• 주출입구 및 보행출입구, 보행자도로 및 완충녹지 구간에 설치되는 보도 등의 포장,위치,형태 등은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관할 지자체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와 인접한 공원 / 학교시설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계단, 산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벽체두께, 형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본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소음을 재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단위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세대 내 천장고는 거실/침실기준 2,300mm로 설계되었으며 우물천장 설치 및 확장/옵션 평면선택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천장고 및 실별 바닥단차는 변경될 수 있</li> </ul>

음.

- 고객의 개별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단,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동일 타입이라도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의 출입문 설치방향은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방화문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도어락이 기본 설치·제공되오니, 이 점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 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창호 종류 및 사양/크기, 개구부의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 세면대 선반하부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도배 및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천장 상부 가려지는 부위는 벽체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무늬코트 상부 코팅은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 재질, 색상,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타입별 개별 실의 설치 위치 및 배치가 상이함에 따라 창 또는 문의 세부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화장실 등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의 타일 줄눈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사전에 세대 타입별 공간의 폭/깊이 등 치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전제품을 구매/설치하기 바람. 설치 불가 및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청소용 스프레이건, 청소용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소방배관, 가스배관, 에어컨배관(옵션 선택 시), 덕트 마감커버, 주방배기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59A, 59B, 84A, 84C, 84D TYPE은 다용도실에 천장이 시공될 예정임.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수관, 배수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장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된 실외기 외에,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과도한 전기료,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누전 또는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외기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주택형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돌출되어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1층 및 필로티 상부층, PIT 상부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세대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로 교차설치 될 예정임.
- 하부층이 필로티 또는 PIT층 일 경우 상부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견본주택에 보여지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별(피난층, 필로티 또는 PIT/부대시설 상부 세대 제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피난 가능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신고 등 인허가 진행중 필요시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세대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설치 기준에 따라 위/아래 세대가 교차되어(엇갈리게) 설치되어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실 시공시 설치공간 내 피난구의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대 내 무선 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 설치는 1층, 2층에 한하여 설치됨.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주방 하부장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는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현장 조건이나 설계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이 시공될 수 있음.
- 전기쿡탑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의 타공 및 타공마개는 설치되지 않음. 전기쿡탑 옵션 금액은 가스쿡탑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에어컨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및 세대 환기 디퓨저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li> <li>• 401동(4호라인), 403동(5호라인), 404동(4호라인), 406동(1호라인), 407동(1호라인), 408동(1호라인)의 경우 침실 공간이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일부 인접해 있어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별 1층 필로티 내에 자전거 보관소, PM 주차공간 및 일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고, 각 동 근처에는 쓰레기보관소, 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본공사시 설치 위치 및 크기,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소음, 냄새 발생 및 조망권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호반ON 등 스마트홈 서비스는 입주민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이용 가능함.</li> <li>• 스마트홈 서비스의 제공 기능은 연동 환경 및 기술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음.</li> </ul>
학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li> <li>• 본 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풍무역세권 내 확보한 부지에 학교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설립이 지연될 경우 인근 학교에 임시 분산 배치될 수 있음</li> <li>• 중학생은 김포중학교*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경우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li> </ul> <p>* 김포중학교: 김포중, 김포여중, 감정중, 금파중, 풍무중, 양도중 및 중학교 신설 시 (가칭)풍무역중 추가</p>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59A, 84B 타입이 설치되어 있음.</li> <li>•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세대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 사양 및 위치, 환기 디퓨저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소방 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스피커 등)은 건본주택용이며, 실시공 시 소방 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li> <li>•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이 포함된 VR동영상임. 사이버 건본주택의 전시장품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ul>
분양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li> <li>•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교육시설·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차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 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li> <li>•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각 1/2씩 균등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li> </ul>
설계 및 단지내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재활용보관소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인접 동, 인접 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li> <li>•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사업지로 관련 형태, 크기, 디자인 등은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접근성, 조망, 소음 및 미관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옥상 출입구, 계단실 1층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등) 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견 및 제반법규 등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 단지 남측 403동 전면에 설치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됨.
  - 부출입구 : 단지 서측 401동, 408동 사이에 설치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됨.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 근린생활시설은 남측 도로변, 402동, 403동 사이에 설치되며, 남측 주출입구를 공동주택과 공동 사용하여 진입하며, 주차장은 지상층에(403동 전면) 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되어 별도로 설치됨.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와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계획기준상 401~408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향후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라 입주시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 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1층~지상1층 주차장 및 커뮤니티를 연결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엘리베이터 총 1대, 계단실 2개소)이 404동 북서측(커뮤니티시설 선큰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옥외계단과 인접한 세대에는 시각적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옹벽+벽면녹화,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 동앞정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놀이터, 보행자 전용도로,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및 기타 시설물(쓰레기보관소, 자전거/PM보관소, DA 등)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401동과 408동 사이 지하에 전기/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있고, 407동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실, 기계실, 열교환기실, 우수저류조#1, 403동/404동 인근 지하에 우수저류조#2, 펌프실, 지하층 곳곳에 환풍이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층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수증기, 열기 또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환풍 및 동통신실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매연(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동 옥상 및 옥탑부 지붕 및 측벽면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옥상 구조물 설치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등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대비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고층 또는 일부 인접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빛공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 단지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우수 저류조는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홍수 저감을 위하여 활용 및 관리 되어야 하며 입주자 협의체에서는 주기적인 관리 및 필요 시 행정기관 관리상태 점검 등의 경우 협조해야 함.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사인물, 경관조명,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안테나, 피뢰침 등이 설치되어 상부층 세대의 미관, 조망, 빛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주민공동시설 저층부 측벽면 및 기타 벽체에는 벽면부착형 벽면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벽면 녹화의 설치위치, 면적, 등반보조재의 디자인/형태/크기/재질/색상 등 세부 사항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병해충 발생 및 식물 고사 등에 따른 미관 저해, 유지보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 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 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현관 및 필로티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당사 특화 계획과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외벽, 옥상, 옥상 구조물, 옥탑 등의 구조물의 디자인, 형태, 줄눈,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세부 구조 계산 등을 통해 옥상 구조물의 부재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 위치, 크기, 설치방향 등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 및 전기실, 기계실, 지하 주차장 램프 등의 설치에 따라 각 동별 주차장 이용 여건이 상이하거나 주차장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 1~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403동 남측 지상에 완전 분리되어 설치되며, 공동주택과 주차장을 공유하지 않음.
- 본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남측 주출입구 주차램프(403동 남측) 진입, 또는 동서측 부출입구 주차램프 (401동과 408동 사이) 진입, 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남측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 가능함.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빛간섭, 매연발생 등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 2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음.
-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후 입주자 충전 편의를 위하여 임시로 운영 될 예정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카페, 키즈스테이션(어린이승하차장),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라운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경비실,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근로자휴게실, 세대창고, 기타 휴게공간 등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은 404동 후면, 405동 측면부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지상에서 404동 북서측의 계단실(계단, 엘리베이터) 및 선큰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웬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됨. 또한 실시공 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입면, 창호, 색채, 디자인 등의 계획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층에 어린이집/경로당, 주민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유아 놀이터, 용역원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소음등에 영향이 발생됨.
- 주민공동시설 내부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타격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내에는 계단 및 장애인경용 승강기 1개소, 계단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이용객 통행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유아놀이터, 어린이집, 옥외 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 405동 5호라인 지상 1층 /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용역원휴게실, 어린이/작은도서관, 독서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 404동 북서측 후면, 405동 남서측 전면부 지하 1층 / 주민카페, 키즈스테이션 : 401동 1호라인 지상 1층 /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 408동 지상 1층 북서측면에 설치됨
- 어린이놀이터-1 : 401, 402, 403, 404동 사이 / 어린이놀이터-2 : 406동 북측 설치
- 주민운동시설-1 : 407동 남서측, 408동 북서측 인근 / 주민운동시설-2 : 401동 남서측, 402동 북서측 인근 / 주민운동시설-3 : 404동 북동측, 405동 남동측 인근
- 근린생활시설 : 402동과 403동 사이 지상에 1개층 규모로 설치 (※ 상가 구획 및 연결 통로, 창호, 입면, 디자인,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카페,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공간) 또는 실과 인접한 외부 공간, 지붕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미관의 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나 형태, 크기,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단지의 AS, 하자 보수 등 입주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A/S사무실은 기본 36개월 운영되며,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또는 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을 일정 A/S사무실 운영 기간동안 시공사의 업무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 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자전거/PM보관소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 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 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팸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하1층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추후 공

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출입구 인근, 필로티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함.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유효 지반가속도(S)	지반 종류	중요도 계수(I <sub>e</sub> )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76	S <sub>4</sub>	1.2	D	I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내진 I 등급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이 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 PAD,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등은 기간 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401동 지붕에 TV 공청 안테나(전파 방향 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안테나(401동, 403동, 404동, 408동 지붕층) 및 중계설비(지하주차장 동통신실 및 P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 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법 및 방송 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지역난방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AI 스마트 트레이닝, 키즈 플레이 라운지(톡톡박스, XR콘텐츠룸), 교보문고 디지털 도서관, 스마트 원격 건강관리, 카케어존 등 커뮤니티 콘텐츠는 향후 입주민 편의를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으로 제공될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과정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체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에 수반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 제반 비용은 입주민 공동관리비로 부과됨.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는 전체 입주민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며,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부 커뮤니티 콘텐츠는 이용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며, 해당 이용료는 이용 세대에 개별 부과됨.
- 커뮤니티 콘텐츠는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전문 위탁관리업체 간 협의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전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시범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전자제품, 집기·비품 및 기존 시공 시설물 등은 서비스 제공사의 소유물로서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반납 되거나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음. 입주민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김포 풍우역세권 B4BL 공동주택	인증번호 : G-SEED-P-2026-0562-7
건축주 : (주)반산업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 2029년 2월 28일	유효기간 : 2026.05.28 ~ 사용승인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	
층수 : 지하 2층, 지상 29층 / 660세대	
면적 : 110,727.6712㎡ (평가면적: 110,512.816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자 : ㈜디에이그를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총합등급 ★★☆☆

2026년 5월 28일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공동주택성능등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김포 풍우역세권 B4BL 공동주택  
2. 신청자: (주)반산업  
3.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중격용 차단성능	★	20. 연경면 녹지율 조성	해당없음
2. 중앙중격용 차단성능	★	21. 차양지붕 녹지율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단열외벽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정물저수공간(비오름) 조성	해당없음
5. 화염상승 억제수 소용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관리·유지성 적용부분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관리·유지성 공용부분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2. 제연설비	★
3. 표층사 일조·정도량(양광기·휴양기용 판·양)	해당없음	3. 내화성능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4. 수평안전거린	★★
5. 에너지 성능	★★★★	5. 복도 및 계단 유도지배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능 장치	★	6. 난방설비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용 기술의 적용	★★★★		
9.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특장설비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열량성인인 자열(타이)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저지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5월 28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01.>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김포 풍우역세권 B4BL 공동주택	인증번호 : 20260519-1141-1655	평가자 : 구분준	
준공연도 : 2029.02.28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층수 : 지상 29층 / 지하 2층			
면적 : 110,727.6712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디에이그를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5 등급

□ 에너지 저감률(%) 합계 : 20.97 %  
대지 내 : 20.97 %  
대지 외 : 0.00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 87.8 kWh/㎡·년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 (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저감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87.8 kWh/㎡·년	20.97 %	5 등급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소요량에 연료의 체적,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에너지 저감률 : 1차 에너지 총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순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상세한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 예비인증률 평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건축물은 해당 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실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실제 평가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5 ) 등급으로 결정되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5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임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b>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b>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청목플러스(주)	(주)하나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동호이엔씨
감리금액(VAT포함)	2,778,806,800	556,412,178	807,204,720	100,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사내용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51,547,008,103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47,869,093,000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548,636,000		
	기간이자	9,737,271,771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346,783,000		
	필요적경비	7,498,610,849			조적공사	1,926,597,000		가스설비공사	561,262,000		
	그 밖의 비용	1,065,057,124			미장공사	3,623,295,000		자동제어설비공사	204,004,000		
	계	169,847,947,847			단열공사	1,521,517,000		특수설비공사	1,599,856,000		
		방수·방습공사			1,311,185,000	공조설비공사		-			
공사비	토목	토공사			5,736,168,000	공사비	그밖의공종	전기설비공사	9,402,623,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3,138,387,000	정보통신공사	3,108,379,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4,010,935,000	소방설비공사	7,572,522,000
		옹벽공사			219,026,000			금속공사	1,275,013,000	승강기공사	2,404,491,000
		석축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						

건축	우수·오수공사	800,113,000	기계설비	창호공사	6,400,527,000	간접비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6,258,500,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780,643,000		이윤	6,303,423,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54,473,000		타일공사	2,701,691,000		계	156,302,882,000	
	도로포장공사	239,844,000		돌공사	3,340,731,000		설계비	2,621,186,784	
	교통안전시설물공사	92,688,000		도장공사	1,708,756,000		감리비	4,242,423,698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902,435,000		일반분양시설경비	21,670,000,000	
	조경공사	4,349,390,000		수장공사	1,689,961,000		분담금 및 부담비	-	
	부대시설공사	509,868,000		주방용구공사	2,711,784,00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5,150,483,000		그 밖의 건축공사	2,358,544,000		기타사업비성 경비	26,366,208,562	
	가시설물공사	2,782,527,000		급수설비공사	1,482,108,000		계	54,899,819,044	
	지정 및 기초공사	3,124,081,000		급탕설비공사	528,090,000		그 밖의 비용	73,182,051,109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2,552,450,000		합계	454,232,70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원, VAT포함)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택지비 가산비 계	18,300,939,744	건축비 가산비	말뚝박기공사	12,359,086,200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9,737,271,771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	14,768,958,000
	제세공과금	7,498,610,849		분양보증수수료	1,285,529,415
	필요적경비	1,065,057,12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사비	3,784,554,896
건축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73,182,051,109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947,351,940
	구조형식가산비	3,563,283,402		설계비 추가비용	327,648,347
	공동주택 성능등급	3,104,722,285		안전관리비	202,336,703
	법정초과 복리시설	1,518,863,800		법령개정에 의한 가산비	4,098,013,200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공사	21,636,750,750		사업승인 조건 가산비	5,584,952,171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호반써밋 풍무Ⅲ”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6-101-0003400 호	322,432,11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및 시공사	주식회사 호반산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75, 5층(동천동)	200111-0308994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약도		안내
현장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	견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b>분양문의: 1670-78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10:00 ~ 17:00</li> <li>※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li> <li>■ 운영기간: 분양종료시까지</li> <li>※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s://hobansummit-pungmu3.co.kr/">https://hobansummit-pungmu3.co.kr/</a>
<p><b>견본주택</b>   김포시 사우동 547-8 번지(풍무역 1번 출구)  <b>현장</b>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풍무역 1번 출구)</p>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